

전 / 안 / 법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 / 안 / 법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2018.7.1일부터)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8. 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 / 안 / 법

어떻게 달라지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2018.7.1일부터)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8. 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Contents



I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5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6

구매대행업자

6

병행수입업자

8

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 포함)

10

통신판매중개업자

10

II

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13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14

구매대행

23

병행수입

26

제도 일반

33

첨부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

35

첨부 2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39

첨부 3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41

첨부 4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현황

42



I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하나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 첨부 1 참고)에 관련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및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한 후 출고 또는 통관시켜야 합니다.

- ▶ 또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정보 (KC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
업자명)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일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야 하며, 제품 또는 포장에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한 후 출고 또는 통관시켜야 합니다 (KC마크를 붙여서는 안 됨).

구매대행업자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구매대행이란 ①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매, 대여
목적이 아님) ②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고가 있으면 안 됨) ③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④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2조제16호).

- ▶ 쉽게 말해 소비자의 직구(直購 : 개인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판매자의 제품을 직접
구매)를 도와주는 영업형태입니다.

➡ 다음 제품에 한해 구매대행을 해야 합니다.

-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있는 제품
-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
(첨부2 참고)



- ➡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 됨).

-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 구매대행한 제품 또는 구매대행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의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병행수입업자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병행수입'이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상표가 부착·배포된 상품)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 제2조제17호).
- ➡ 병행수입제품이라는 이유로 인증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면제 받았을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아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 ➡ 또한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제품명, 모델명 (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 포함)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KC마크 및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이 표시된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 ▶ 인터넷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련 정보 (KC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일 경우

제품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이 표시된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 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 포함)가 구매대행 또는 병행수입을 겸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 또는 병행수입업자의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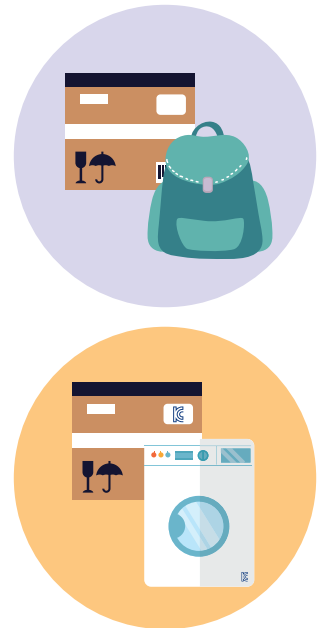
- ▶ KC마크 및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이 표시된 제품을 판매 중개해야 합니다.
- ▶ 안전 관련 정보 (KC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 ▶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시 안전 관련 정보 (KC마크, 인증번호,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를 입력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 구매대행 제품일 경우

사이버몰에서 구매대행업자가 아래 고지사항을 게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게시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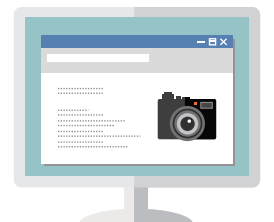
-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일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병행수입 제품이라는 이유로 인증 면제받은 경우

사이버몰에서 병행수입업자가 아래 고지사항을 게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게시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할 경우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제품명, 모델명 (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위의 조치를 취할 경우 사이버몰에 입점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고지사항에 대한 게시를 하지 않더라도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II

**어떤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1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란 무엇인가요?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②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③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 3단계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 ❖ 그런데 2018.7.1일부터는 위 3단계에 추가하여 생활용품 중에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제품을 모아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하기만 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없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안전관리대상 제품 분류

높음 ← (위 해 도) →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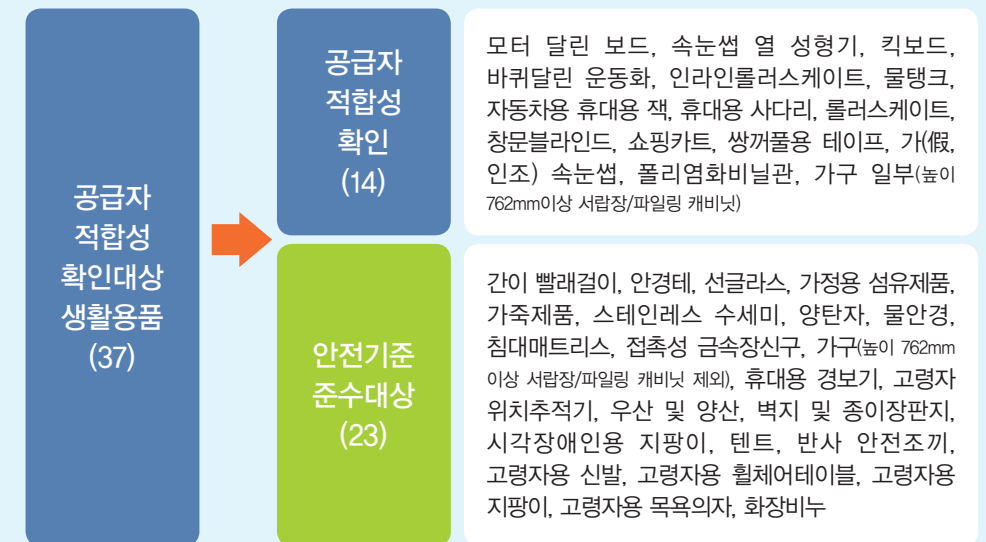


구 분	마 크	절 차
안전인증대상		제품시험 + 공장심사 → 인 증 → 판 매
안전확인대상		제품시험 → 신고 → 판 매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제품시험 → 판 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없음	제품시험 의무없음 → 판 매

2 어떤 품목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하나요?

- ❖ 가정용 섬유제품 (성인용 의류, 속옷, 침구류 등), 가족제품 (가족으로 만든 가방, 의류, 지갑 등) 등 23개 품목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입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3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KC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만들거나 수입해서 팔아도 되나요?

- ❖ 아닙니다.
품목별로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지자체로부터 과태료, 판매금지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안전기준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포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관리하는 모든 품목별 안전기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품목별 안전기준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5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전기준을 예전보다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 아닙니다. 2018.7.1일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됩니다.

6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 의무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 어떻게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제품시험을 하지 않고도 ① 원자재 (염료, 방수 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 민간 자율 인증 ④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7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제품에 어떤 사항을 표시해야 하나요?

- KC마크는 붙이지 않되,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 의류제품 표시사항

- 섬유의 혼용률
 - 겉감 : 면 100%
 - 안감 : 폴리에스터 100%
- 제조사명(또는 수입자명)
 - 국가기술표준원
- 제조국명 : 한국
- 제조연월 : 2018.07
- 치수(cm)
 - 가슴둘레 : 85-93
 - 허리둘레 : 70-80
 - 키 : 157-170
- 취급상 주의사항
 -     
-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 043-870-0000)



- 특히 가정용 섬유제품 (성인용 의류, 속옷, 침구류 등)에 대해 표시할 경우 다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세부 사항은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1 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열람 → 생활용품 안전기준).

- 세탁시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로 표기
- 박음질 표시가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해할 경우 (속옷, 양말, 장갑,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 모자, 신발, 타올, 넥타이, 턱받이류 등) 개별제품의 포장, 꼬리표,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
- 취급상 주의사항은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4종류 이상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
-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 기입도 가능
예)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
예) 품목 : 내의류

8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KC마크는 붙이지 않아야 하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9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표시사항은 언제부터 지켜야 하나요?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표시 의무는 2018.7.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따라서 2018.7.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는 KC마크를 붙이지 않고,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등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한 표시사항만 표시하면 됩니다.



10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이미 붙어있는 KC마크는 2018.7.1일부터는 떼어내야만 제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2018.7.1일 이전에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을 완료하고 KC마크를 붙인 제품에 대해서는 출고 또는 통관 시기가 2018.7.1일 이후일 경우에도 KC마크를 떼지 않아도 되며, 2021.6.30일까지 적법하게 유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의 KC마크 인터넷 게시도 2021.6.30일까지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참고).

11

어린이용 섬유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시험 및 KC마크 표시를 안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어린이용 의류 제품 (만 13세 이하가 사용)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앞으로도 반드시 제품시험 및 KC마크 표시를 해야 합니다.



12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KC마크를 붙일 경우 처벌을 받나요?

➔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따라 과태료, 벌칙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 대여업자 · 판매중개업자 · 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파기, 수거, 판매중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제4항제1호,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 대여업자 · 판매중개업자 · 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제1항제2호, 제40조제4항제2호). 또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제2항제18호).

❖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 대여업자 · 판매중개업자 · 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제1항제2호, 제40조제4항제2호).

❖ 표시사항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 대여업자 · 판매중개업자 · 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제4항제3호).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또는 보관할 경우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 대여업자 · 판매중개업자 · 수입대행업자 등은 개선 또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0조제4항제4호). 제조업자 · 수입업자 · 판매업자 등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제2항제19호).

14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 대여, 판매중개 또는 수입대행할 경우 인터넷상으로 소비자에게 제조국, 모델명, 제조시기 등을 알려야 하나요?

-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인터넷상으로 소비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 게시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5

2018.7.1일부터 시중 유통 중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가 강화되나요?

- ❖ 그렇지 않습니다.

-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 ▶ 정부는 업계의 그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시장 감시 차원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표시사항 위반 등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 다만, 2018년은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보다는 새로운 제도를 알리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16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소상공인이 많이 취급하는 섬유제품 (의류, 원단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에 대해 2018년부터 정부와 지자체 (경기도, 부산시)가 시험장비를 공동 구축하고 시험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섬유제품 (의류, 원단 등) 시험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경기도, 부산시 소재 기업
- 비용 지원 : 섬유 3대 유해물질 (폼알데하이드, pH, 아릴아민)에 대한 시험비용 75% 지원
- 연 락 처 : (경기도) 특화산업과 031-8030-2724
한국섬유소재연구원 031-860-093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31-8040-6212~4
(부산시) 기간산업과 051-888-4628
한국신발피혁연구원 051-605-3391



접촉성 금속장신구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시험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기업
- 비용 지원 : 니켈에 대한 시험비용 75% 지원
- 연 락 처 : (경기도) 특화산업과 031-8030-2724
한국섬유소재연구원 031-860-0931



- 정부와 지자체는 대상 품목 및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구매대행



1

해외 사업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 또는 구매대행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나요?

-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판매 또는 구매대행할 경우 ① 사업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② 사업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③ 사이트가 국내 기반인지, 해외 기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일 경우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2018.7.1일부터, 상세 품목은 첨부2 참고).
- 반면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8.7.1일부터, 상세 품목은 첨부3 참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이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매대행이 가능하나, 「관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법률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구매대행업자는 일부 KC마크가 없는 제품도 구매대행이 가능한데
통신판매업자는 왜 KC마크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나요?

- ▶ 구매대행은 소비자의 직구를 대행하는 것으로서 ①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므로 구매대행업자는 제품에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 ② 해외 시장에서 KC마크가 붙은 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해도가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허용 하였습니다.
- ▶ 반면 통신판매는 ①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KC마크가 붙었는지 여부를 판매 전에 확인 가능하다는 점 ② 통신판매업자는 ‘판매업자’로서 소비자안전 보호 의무를 오프라인상의 판매업자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4

구매대행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할 경우 소비자에게
어떤 사항을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 ▶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구매대행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품별로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 됨).

-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 KC마크
 -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5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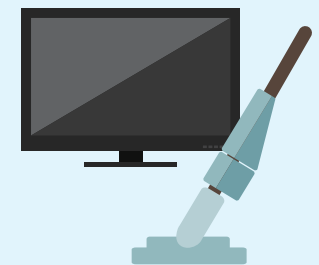
- ▶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제1항제5호).
- ▶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한 경우
전기용품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9조제1항 제12호 및 제25호), 생활용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51조제2항 제4호 및 제9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품 자체는 KC마크 표시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제품이나 그
제품에 포함된 부품·부속품은 KC마크가 있어야 구매대행이
가능한 부품·부속품일 경우 부품·부속품에 KC마크 표시가
없더라도 이 제품은 구매대행이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예: 배터리가 장착된 무선청소기, 부속품으로서 직류전원장치가 함께 포장되어 있는 TV).
- ▶ 다만 부품·부속품을 단독으로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KC마크 표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병행수입



1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018.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식 수입업자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 참고)
- ②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③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 ④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또는 인증 · 신고번호

➡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②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 (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
- ③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 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처한 사진, 단 KC마크 표시가 보여야 함)
 -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절차 : 병행수입업자는 위 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됩니다 (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 필요).

2 병행수입으로 인증을 면제받은 모델은 제품에 KC마크를 붙이지 않아도 되나요?

➡ 아닙니다.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기타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3

병행수입제품이 인증을 면제 받았을 경우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 병행수입업자는 제품 또는 포장에 아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1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2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3 KC마크
- 4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5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4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 등은 구매자에게 어떤 사항을 고지해야 하나요?

➔ 인증을 면제 받은 병행수입제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 1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2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3 KC마크
- 4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5 제품명, 모델명 (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6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5

정식 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정식 수입업자보다 먼저 인증을 받고 수입한 모델이 있을 경우 동일한 모델을 나중에 수입하는 업체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증 받을 방법은 없나요?

➔ 있습니다. 이미 인증 받은 모델과 동일 모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준비해야 할 서류 : 동일모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① 신청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 참고)
 - ②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③ 제품 시료 (전기용품), 제품 사진 (생활용품)
- * 전기용품의 시료는 한국제품안전협회 (02-890-8300)에서 인증을 면제받은 후 제출 가능합니다.

➔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3가지 서류를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을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동일 모델 확인을 받으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 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① 전기용품의 경우 : 제품 시료를 통해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시험 일부를 면제 받게 됩니다 (면제되는 시험 항목은 품목에 따라 다름).
- ② 생활용품의 경우 : 동일 모델임이 확인될 경우 시험 전부를 면제 받게 됩니다.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공급자적합성확인 인증기관을 통하지 않고 수입업자가 스스로 진행하므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자율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 ➔ 참고로, 병행수입업자가 위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①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②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등 2개 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6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을 병행수입할 경우에도 제품 (또는 포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제품은 병행수입 제품임” 등의 사항을 표시 내지 고지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 ▶ 3, 4에서 설명한 바 있는 병행수입업자의 표시 또는 고지 의무는 정식 수입업자가 이미 인증 받아 수입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병행수입업자가 수입할 때 적용되는데,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경우 당초에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으로서 병행수입업자의 표시 내지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 ▶ 다만, 제품 또는 포장에 품목별 안전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은 표시해야 합니다.
- ▶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조국, 모델명, 제조시기 등을 게시할 의무는 없지만,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 게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인증 면제 받은 병행수입 모델은 이미 인증 받은 정식수입 모델과 동일한 인증번호를 사용하게 되나요?

➔ 아닙니다. 별도의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가 부여됩니다.

8

인증 면제 받은 병행수입업자가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할 사항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표시 또는 고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51조제1항제6호).



9

중고 제품을 병행수입할 경우에도 인증 면제가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 ▶ 중고 제품은 병행수입 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중고 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안전인증대상 및 안전확인대상 중고 전기용품은 수입하기 전에 소정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8조, 제17조).



10

정식수입제품이 인증 취소되었을 경우 병행수입제품이 인증 면제 절차에 따라 받은 인증도 취소되나요?

-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식수입제품이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경우 병행수입제품이 받은 인증도 취소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 : 정식수입업자가 안전인증을 자진 반납) 병행수입제품이 받은 인증은 유효합니다.

11 인증 면제가 가능한 병행수입제품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 ▶ 병행수입제품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유통되는 제품을 상표권 침해 없이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 국내 전용사용권자 설정 여부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에서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세관에 등록된 상표에 한하여 확인 가능)

▶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특허로 (www.patent.go.kr)

상표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후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제도 일반

1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은 2018.7.1일부터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는가요?

- ▶ 2018.7.1일부터 출고 또는 통관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행이 유예되었던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총 14개 품목)

- | | | |
|--------------|----------------|----------------|
| ① 모터 달린 보드 | ② 킥보드 | ③ 바퀴 달린 운동화 |
| ④ 인라인 롤러스케이트 | ⑤ 롤러스케이트 | ⑥ 창문 블라인드 |
| ⑦ 자동차용 휴대용 잣 | ⑧ 속눈썹 열 성형기 | ⑨ 휴대용 사다리 |
| ⑩ 물탱크 | ⑪ 쇼핑카트 | ⑫ 가(假, 인조) 속눈썹 |
| ⑬ 쌍꺼풀용 테이프 | ⑭ 폴리염화비닐(PVC)관 | |



※ 가구 일부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닛) 포함



- ①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 제품에 대해 스스로 제품시험을 하거나 국가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제품시험 실시
- ② KC마크, 제조국, 업체명, 모델명, 제조시기 등 품목별 안전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표시
- ③ 시험성적서 등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보관
- ④ 인터넷 판매시 안전 관련 정보 (KC마크, 제품명, 모델명,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게시

2

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떤 경우에 면제가 가능한가요?

-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연구 · 개발, 전시회 및 박람회 출품, 제품시험, 시장조사, 국제대회 등에 사용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 제조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 또는 관할 시 · 도지사 (수출 목적용 수입)의 확인을 받아 면제가 가능합니다.

인증 등 면제가 가능한 경우

분 류	요 건	면제 확인 신청
연구 · 개발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협회 (02-890-8300)
전시회 · 박람회 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안전인증기관 ·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시장 조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수리 · 보수를 위한 부품	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인 부품을 수리 · 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특수구조용품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	
산업용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의 경우	관할 시 · 도지사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별도 면제 신청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3

제품의 안전인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www.safetykorea.kr) → 빠른 서비스 → 인증정보검색}.

첨부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

□ 생활용품 (77개 품목)

구 분	분 야	안전관리대상 품목
안전인증 (11)	화학(1)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트레드고무를 포함)
	금속(1)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생활용품(3)	• 가스라이터 • 물놀이기구 • 비비탄 총
	기계(6)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 부품 • 조속기(調速機) • 비상 정지장치 • 완충기 •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 승강장 문 잠금장치 •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안전확인 (29)	섬유(2)	• 등산용 로프 • 스포츠용 구명복
	화학(3)	• 건전지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자동차용 타이어
	기계(7)	〈생활제품 기계〉 • 빙삭기 •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승강기 부품〉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 부품 • 랩체벌브 •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 안전회로기판
	토건(2)	• 미끄럼 방지 타일 • 실내용 바닥재
	생활용품(15)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고령자용 보행차 • 디지털도어록 •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 스노보드 • 스케이트보드
		• 스키용구 • 이륜자전거 • 헬스기구 • 휴대용 레이저용품 • 승차용 안전모 • 운동용 안전모 • 온열팩 • 수영패드 • 기름난로
공급자 적합성확인 (14)	화학(1)	• 폴리염화비닐관(연질염화비닐호스를 포함)
	생활(11)	• 롤러스케이트 • 바퀴 달린 운동화 • 모터 달린 보드 • 창문 블라인드 • 쌍꺼풀용 테이프 • 속눈썹 열 성형기 • 가(假) 속눈썹 • 쇼핑카트 • 휴대용 사다리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킥보드 • 가구 일부(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사무용 파일링 캐비닛)
		• 자동차용 휴대용 잭
		• 물탱크
안전기준 준수대상 (23)	화학(2)	• 가죽제품 • 화장비누
	생활(19)	•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 • 간이 빨래걸이 • 선글라스 • 안경테 • 텐트 • 고령자용 신발 • 고령자용 지팡이 •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 고령자용 목욕의자 • 고령자 위치추적기 • 물안경 • 반사 안전조끼 • 스테인레스 수세미 •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팡이 • 침대 매트리스 • 우산 및 양산 • 휴대용 경보기 • 접촉성 금속 장신구 • 벽지 및 종이장판지(인테리어 필름을 포함)
		• 가정용 섬유제품 • 양탄자

□ 전기용품 (173개 품목)

구 분	분 야	안전관리대상 품목
안전인증 (39)	전선 및 전원코드	• 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전기기기용 스위치	• 스위치 • 전자개폐기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퓨즈 • 차단기
	절연변압기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기기	• 전기청소기 •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 주방용전열기구 •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 모발관리기 •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음식이나 그릇류 등을 보온하는 기능을 가진 것)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전기액체가열기기 •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전기온수기 • 전기 냉장 · 냉동기기 •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 • 전기충전기 •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 • 전열기구 • 전기마사지기 • 냉방기 • 유체펌프(여과기능이 내장된 펌프를 포함하며, 사용액체의 온도가 90℃ 이하인 것만 해당되며, 진공펌프, 오일펌프, 샌드펌프 및 기계 · 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 전기가열기기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전기욕조 • 팬, 레인지 후드 • 화장실용 전기기기 • 가습기
	전동공구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정보·통신·사무기기	• 직류전원장치
	조명기기	• 램프홀더 • 일반조명기구 •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 안정기내장형램프
안전확인 (63)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절연변압기	• 고주파웰더 • 전기용접기
	전기기기	• 과일 껍질깎이 • 전기 용해기 • 이 · 미용기기 •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 컴프레서(compressor) • 전기온수매트

구 분	분 야	안전관리대상 품목
안전확인 (63)	전기기기	• 구강청결기 • 해충퇴치기 • 전기집진기 • 서비스기기 • 전기에어커튼 •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 폐열 회수 환기장치 • 게임기구 •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 전기훈증기 • 수도 동결 방지기 • 산소이온발생기 • 전기정수기 • 전기세척기 • 전기헬스기구 • 전기차 충전기(정격용량이 100kVA 이하인 것만 해당) • 에너지 저장장치(정격용량이 100kVAh 이하인 것만 해당) • 가정용 전동재봉기 • 사우나기기 •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 기포발생기기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전기분무기 •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주방용 전동기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및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 살충기 • 자동판매기 • 전기소독기 • 제습기 • 음식물처리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텔레비전수상기 • 디스크 플레이어 • 오디오시스템 • 전자악기 • 오디오프로세서 • 영상프로세서
	정보·통신·사무기기	• 모니터 • 프린터(플로터 및 그래픽 전용인 것은 제외) • 프로젝터 • 문서 세단기 • 천공기 • 제본기 • 복사기(광원의 정격출력이 1.2kW 이하인 것) • 무정전공급장치(정격용량이 10kVA 이하인 것)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디지털TV(스마트 TV, IPTV 등) • 코팅기 •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를 포함) • 전지(충전지만 해당)

구분	분야	안전관리대상 품목
안전확인 (63)	조명기기	- 백열등기구 - 방전램프 그 밖의 조명기구 - 그 밖의 램프
공급자적합성 확인 (71)	전기기기	- 감자 탈피기(脫皮機) - 전기 정미기(精米機) - 전기 빵 자르개 - 애완동물 목욕기 - 전기주류숙성기 - 전기시계 - 적외선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 전기분수기 - 투영기 - 착유기(搾油機) - 보풀제거기 -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 전기 작동 도어록(door lock)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 전동형 롤스크린
	전동공구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 비디오카메라 - 튜너 - 라디오수신기 - 리시버 - 음성기록계 - 음성플레이어 - 위성방송수신기 - 비디오폰 - 음질조절기 - 신호변환장치 - 컴프레서 게이트 - 전자시계 - CCTV 카메라 -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 영상기록계 - A/V신호수신기 - CATV방송수신기 - 턴테이블 - 모듈레이터 -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 표시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 - 오디오 및 비디오 학습기 - 앰프 - 편집기 - 음성 및 영상분배기 - 영상전송기
	정보·통신 ·사무기기	- 스캐너 - 지폐계수기 - 금전등록기

구분	분야	안전관리대상 품목
공급자적합성 확인 (71)	정보·통신 ·사무기기	- 여학실습기 - 전자칠판 및 보드 - 동전계수기 - 전동타자기 - 전기소자기 - 교통카드 충전기 - 번호표 발행기 - 생활무선국용 무선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 - 음성 · 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 -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 -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을 말한다) - 재단기 - 실물화상기 - 입체영상기 -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 - 전화기(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 -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한다) -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 - 공중전화화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 - 원격제어방송기기
	조명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

* 안전관리대상 세부품목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별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용요령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 고시·공고 메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검색하거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 메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검색하면 다운로드 가능

첨부 2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

구분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인증 대상 (27개 품목)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청소기, 전기다리미 및 전기프레스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모발관리기, 전기보온기 및 전기온장고, 주방용 전동기기(AC), 전기 액체가열기기, 전기담요 및 매트(전기침대 제외), 전기온수기, 전기냉장·냉동기기, 전자레인지, 전기건조기, 전열기구(전열보드 제외), 전기마사지기, 냉방기, 전기가열기기, 전격살충기(AC), 팬 및 레인지후드, 화장실용 전기기기, 가습기, 전동공구(AC), 직류전원장치(휴대전화배터리충전기 제외), 안정기내장형 램프(안정기내장형 LED램프 제외)	물놀이기구, 압력냄비·압력솥

구분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확인 대상 (80개 품목)	고주파열대, 전기용접기, 과일껍질깎이, 전기용해기, 이·미용기기, 전기의자 및 전동침대, 구강청결기, 해충퇴치기, 전기집진기, 서비스기기, 전기에어커튼, 팬코일유닛(fan coil unit), 게임기구, 식기세척기 및 식기건조기, 전기훈증기, 산소이온발생기, 전기세척기(초음파세척기 제외), 전기차 충전기, 가정용전동재봉기, 사우나기기, 관상 및 애완용 전기기기, 공기청정기(AC), 전기분무기, 주방용 전동기기(DC), 전기찜질기(DC) 및 발보온기(DC), 전격살충기(DC), 자동판매기, 전기소독기, 제습기, 음식물처리기, 텔레비전수상기, 디스크 플레이어, 오디오시스템, 전자악기, 오디오프로세서, 영상프로세서, 모니터, 프린터, 프로젝터, 문서세단기, 천공기, 제본기, 복사기, 무정전전원장치, 디지털TV(스마트 TV, IPTV등), 코팅기, 노트북컴퓨터(테블릿 PC 포함), 백열등기구, 그 밖의 조명기구, 방전램프(무전극형광램프 제외), 그 밖의 램프(PLS방식의 무전극램프 및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 제외)	건전지(충전지 제외),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타이어,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도어록,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승차용 안전모(승차용 눈 보호구 포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수유파드, 기름난로(연료소비량 600g/h이하 한정) 빙삭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렵쳐벨브, 에스컬레이터용 스텝, 에스컬레이터용 스텝체인, 에스컬레이터용 전자브레이크, 안전회로기판, 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미끄럼 방지 타일, 실내용 바닥재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85개 품목)	감자 탈피기, 전기 정미기, 전기 빵 자르개, 애완동물 목욕기, 전기주류숙성기, 전기시계, 적외선 · 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분수기, 투영기, 착유기, 보풀제거기, 새싹 및 콩나물 재배기, 전기 작동 도어록,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전동형 롤스크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동공구, 비디오카메라, 튜너, 라디오수신기, 리시버, 음성기록계, 음성플레이어, 위성방송수신기, 비디오폰, 음질조절기, 신호변환장치, 컴프레서 게이트, 전자시계, CCTV 카메라, 영상수신기 및 변환기, 영상기록계, A/V신호수신기, CATV방송수신기, 턴테이블, 모듈레이터, 비디오게임기구(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여 사용하거나 브라운관, 액정표시장치 또는 플라즈마 표시를 갖는 구조인 것만 해당), 오디오 및 비디오 합성기, 앰프, 편집기, 음성 및 영상분배기, 영상전송기, 스캐너, 지폐계수기, 금전등록기, 어학실습기, 전자칠판 및 보드, 동전계수기, 전동타자기, 전기소자기, 교통카드 충전기, 번호표 발행기, 생활무선국용 무선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 음성 · 음향신호 및 기타 신호전송용 무선기기(무선마이크 시스템, 무선스피커 시스템을 포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가입자단말장치(IPTV용 셋톱박스 등),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단말장치(디지털 CATV용 셋톱박스 등), 디지털 재변조형 주파수변환기(지상파 디지털 TV용 셋톱박스, D/A용 셋톱박스, A/V신호수신기 등), A/D 및 D/A 신호변환기(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방송신호로 변환해 주는 셋톱박스 등),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처리기(셋톱박스 등), 재단기, 실물화상기, 입체영상기,	모터 달린 보드, 속눈썹 열 성형기, 킥보드, 바퀴달린 운동화, 인라인롤러스케이트, 물탱크, 자동차용 휴대용 잭, 휴대용 사다리, 롤러스케이트, 창문 블라인드, 쇼핑카트, 쌍꺼풀용 테이프, 가(假, 인조) 속눈썹, 폴리염화비닐관, 가구 일부(높이 762mm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닛)

구분	전기용품	생활용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85개 품목)	휴대폰·스마트폰·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 전화기(공공전화망에 연결되는 것만 해당), 팩시밀리기기(전화기 부가기능을 가진 기기를 포함), 전화기능을 내장한 복합단말기, 공중전화화선을 이용한 데이터전송 및 검색 단말기, 신용카드조회 단말기기, 모뎀을 내장한 특정한 용도의 단말기기(금융단말기기, 정보검색용 단말기기, 현금자동취급기 등),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기기(버스정류장 버스안내 시스템 등), 원격제어방송기기, 형광램프용 스타터(starter)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 (23개)	-	간이 발레걸이, 안경테, 선글라스,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스테인레스 수세미, 양탄자, 물안경, 침대매트리스, 접촉성 금속장신구,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닛 제외), 휴대용 경보기, 고령자 위치추적기, 우산 및 양산, 벽지 및 종이장판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텐트, 반사 안전조끼,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지팡이, 고령자용 목욕의자, 화장비누

첨부 3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

구분	전기용품	생활용품
안전인증 대상 (23개 품목)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전기충전기, AC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 전기욕조, 유체펌프,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제어장치	승강기부품 6종(조속기, 비상정지장치, 완충기, 상승과속 방지장치용 브레이크, 승강장문 잠금장치, 에스컬레이터용 역주행 방지장치),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안전확인 대상 (12개 품목)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compressor), 폐열회수환기장치, 에너지저장장치, 기포발생기, 전기온수매트, 수도동결방지,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충전지만 해당)	-

첨부 4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 현황

구 분	기관명	품목	대표 전화번호	홈페이지
전 기 용 품	안전 인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안전인증, 안전확인 전품목 (112 품목)	1899-7654 www.ktc.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안전인증 3번군 제외 전품목 (111 품목)	1577-0091 www.ktr.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안전인증, 안전확인 전품목 (112 품목)	080-808-0091 www.kt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안전인증, 안전확인 전품목 (112 품목)	1899-7654 www.ktc.re.kr
	안전 확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안전인증 3번군 제외 전품목 (111 품목)	1577-0091 www.ktr.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안전인증, 안전확인 전품목 (112 품목)	080-808-0091 www.ktl.re.kr
		주식회사 원텍	전기기기, 과일껍질깍이 등 16 품목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텔레비전 등 7 품목 모니터 등 12 품목	031-799-9500 www.onetech.co.kr
		(주)유씨에스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텔레비전 등 7 품목 정보, 통신사무기기, 모니터 등 12 품목	1833-5681 www.ucs.co.kr
		(주)씨티케이	오디오, 비디오 응용기기 텔레비전 등 10 품목 모니터 등 20 품목	031-339-9970 www.e-ctk.com
		(주)코스텍	텔레비전수상기 등 6 품목 모니터 등 14품목	031-222-4251 www.kostec.org
		(주)디티앤씨	전기용해기 등 18 품목 텔레비전수상기 등 6 품목 모니터 등 12품목	031-321-2664 www.dtn.net
		(주)에이치시티	모니터 등 13품목	031-645-6300 www.hct.co.kr
		(재)한국조명연구원	조명기기, 백열등기구 등 4 품목	032-670-8888 www.kilt.re.kr
		KCL	전지 1 품목 형광램프 등 4 품목	02-2102-2500 www.kcl.re.kr
		KCTL	오디오, 비디오응용기기, 텔레비전 등 6 품목 모니터 등 11품목 전지 1 품목	031-326-6700 www.kcl.re.kr
		(주)에스테크	모니터 등 10 품목	031-631-8037 www.estech.co.kr

구 분	기관명	품목	대표 전화번호	홈페이지
생 활 용 품	안전 인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물놀이기구	1899-7654 www.ktc.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자동차용 재생타이어	1577-0091 www.ktr.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승강기부품	080-808-0091 www.ktl.re.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02-2102-2500 www.kcl.re.kr
		FITI 시험연구원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비비탄총	02-3299-8000 www.fiti.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02-3668-3000 www.katri.re.kr
		KOTITI 시험연구원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02-3451-7000 www.kotiti.re.kr
	안전 확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건전지,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실내용 바닥재,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디지털도어록, 헬스기구, 이륜자전거, 휴대용 레이저용품, 온열팩, 스케이트보드, 수유판드, 운동용 안전모	1899-7654 www.ktc.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자동차용 타이어, 건전지, 실내용 바닥재(제1부), 수유판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제1부)	1577-0091 www.ktr.or.kr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승강기부품, 휴대용 레이저용품	080-808-0091 www.ktl.re.k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등산용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방삭기,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미끄럼 방지타일, 실내용 바닥재, 고령자용 보행차,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스노보드, 스키용구, 스케이트보드, 이륜자전거, 헬스기구,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온열팩, 수유판드	02-2102-2500 www.kcl.re.kr
		FITI 시험연구원	등산용로프, 스포츠용 구명복,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 수유판드, 스노보드, 스키용구	02-3299-8000 www.fiti.re.kr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등산용로프, 온열팩, 수유판드	02-3668-3000 www.katri.re.kr
		KOTITI 시험연구원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02-3451-7000 www.kotiti.re.kr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기름난로	031-482-2981 www.eaa.or.kr

